비교문화연구 제 8 집 2 호, (2002) pp.195-234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무형문화재, 전통공예기술, 전승교육

전승교육과정의 실상과 문제점에 관한 일연구[1)]
— 공예 ·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

김세건*

문화유산은 우리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문화유산현장 중)

1. 들어가며

지난 반세기동안 진행되어온 근대화와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숨가쁘게 문화 변동을 경험해 온 우리는 오늘날 "우리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언설을 심심치않게 들으며 이 말에 수긍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것" 또는 "한국적인 것"으로 중요 유 · 무형문화재를 떠올린다. 그러나 중요 유 · 무형문화재로 대표되는 "우리 것" 또는 "한국적 것"인 것과 나를 둘러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1) 상기 논문은 2000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한 협동연구 특별정책과제로 연구되었다.(KRF-2000-044-00000 (200-200010002)) 본 논문에 대하여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싼 일상문화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며, 정작 나의 일상에서 생명력을 지닌 "우리의 것" 또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이의 근본적 원인을 지난 40년간 정부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문화정책과 함께 정치도구화와 지배의 관점에서 시행되었던 왜곡된 문화정치"(전경수, 2002: 6)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소위 "문화재"라는 영역과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측면은 민중적 삶의 실재인 문화의 일부를 문화재라는 조작된 항목의 장르로 환원시킴으로서 시간과 공간이 기초가 된 삶 자체를 파편화"(전경수, 2002: 8)시켜왔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정치와 정책은 전통문화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 일상문화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영향과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어, 여기에 대한 재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즉 전통 또는 민속문화는 국가/민족정체성을 형성·통합하기 위한 자원으로 끊임없이 동원되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잠하여 우리의 삶과 문화를 형성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한 고찰은 전통문화를 넘어 일상 문화 전반에 대한 정부의 문화정치과 정책의 특성을 분석해내고, 새로운 문화정치의 환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금석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인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진행된 문화정책, 특히 공예·기술 분야의 전승교육과정의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무형 문화재 지정과 육성의 일차적 목적은 산업화 및 서구문화의 유입 속에서 급속하게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영속시키는데 있다. 무형 문화를 어떻게 보호하고 전승·계승시킬 것인가는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10회에 걸쳐 강남지역에 위치한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일명 강남전수관이라고 한다. 이하 강남전수관)에서 공방을 운영하시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2]를 하였다. 본 글에서는 인터뷰 자료에 기반하여 전승교육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바라보는 문제점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으로 전승교육의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보유자들의 의견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문화재 정책의 다른 핵심 축인 정부, 정확히 말하면 문화재청과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 균형있게 다뤄지지 못한 면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공예기술의 어제와 오늘

무형문화재는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 제 2조 2항)으로 정의된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 · 관리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 · 도에서 지정 · 관리하는 시 ·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크게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그리고 무예 등을 포함하는 예능종목과 공예와 음식 분야의 기능 종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분야별 지정건수는 다음과 같다.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종묘제례악이 지정되었고, 오늘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108종에 이르고, 또한 약 250여종이 시 ·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는 지정초기 당시만 해도 전승자가 되는 것을 천대시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자들이

2) 본 글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가능한 한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표 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2002. 3. 14 현재)

지정분야	예능종목				기능종목		계
	음악	무용	연극	놀이 · 의식	공예기술	음식 · 무예	
지정건수	17	7	14	24	43	3	108
비율(%)	15.7	6.5	13	22.2	39.8	2.8	100

크게 지정자체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꾸준히 새로운 종목을 발굴 · 지정하여 지원하고, 또한 사회인식이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로 경쟁이 심할 정도로 무형문화재 전승자뿐만 아니라 지정종목도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예기술은 중요무형문화재 108개 지정 종목의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된 공예기술 분야의 43개 종목을 재료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금속공예, 목공예, 옥석공예, 죽공예, 도자기공예, 피모공예, 골각공예, 초고공예, 나전칠공예, 제지공예, 지물공예, 직물공예, 채묵공예이다. 공예기술분야는 지난 40여년 동안 지정종목의 수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커다란 증가를 보여왔다. 특히 1996년에 문화재청이 사기장(沙器匠) 등 10개 종목을 공예기술에 새로 발굴 · 지정함으로써 공예기술의 지정종목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런 측면은 다음의 표 2에서 잘 보여진다.

1964년에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꼭두각시놀음 등 3종목, 38명의 기 · 예능 보유자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중요무형문화재는 40여년이 흐르면서 종목뿐만 아니라 보유자 및 전 · 이수자 등에서도 양적으로 커다란 증가를 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도 중요무형문화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있어서 공예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예기술은 다른 종목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다.

〈표 2〉 중요무형문화재의 각 연도별 교육현황

지정분야			예능종목					기능종목		계	비고
			음악	무용	연극	놀이·의식	무예	공예	음식기술		
	지정종목수		18	5	14	16	-	25	2	80	
1	전	보유자	38	9	58	23	-	29	3	160	1984. 10. 현재 (서윤석, 1984: 235)
9	승	조 교	108	33	131	24	-	26	3	325	
8	이수자										
4	자	전수생	85	24	121	61	-	51	6	348	
		계									
	지정종목		17	7	14	23	1	39	2	103	
1	전	보유자	41	10	34	36	1	55	4	181	1997. 5. 7. 현재 (최금오, 1997: 49)
9	승	조 교	102	18	53	66	1	45	3	288	
9	이수자		537	176	275	248	4	129	13	1,382	
7	자	전수생	17	4	-	-	2	80	2	105	
		계	697	208	362	350	8	309	22	1,956	
	지정종목		17	7	14	23	1	39	2	103	
1	전	보유자	44	9	32	34	1	51	4	175	1999.6.12.현재 (이용학, 1999: 31)
9	승	조교	101	19	51	66	1	45	4	287	
9	이수자		646	232	310	286	5	189	13	1,681	
9	자	전수생	13	2	2	-	2	58	-	77	
		계	804	262	395	386	9	343	21	2,220	
	지정종목		17	7	14	24	1	43	2	108	
2	전	보유자	53	12	38	53	1	63	3	223	
0	승	조교	93	19	77	62	1	44	4	300	2002. 3. 14. 현재
0	이수자		853	298	309	336	7	223	13	2,039	
0	자	전수생	16	-	2	2		39	-	59	
		계	1,015	329	426	453	9	369	20	2,621	

* 조교는 보유자후보, 조교, 보조자를 포함한다.

공예기술 분야는 지정종목이 43개로 가장 많으나, 조교 · 이수자 숫자는 263명(2002. 3. 14현재)으로 음악, 무용, 연극, 놀이 · 의식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편이다. 이 점은 공예분야의 전수장학생 숫자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많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공예기술분야의 전수장학생이 전체 59명중 39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전수장학생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선발대상종목을 심의하여 선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취약종목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전수장학생의 대부분이 공예기술분야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은 공예기술분야의 취약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재청은 공예기술분야의 지정종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침체되어 있던 공예의 전승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전승지원자들은 미미한 편이다.

현실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중에서 소위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은 종목간 불균형 전승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먼저 구체적으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은 전승교육과 관련하여 차별성이 나타난다. 연극이나 놀이, 의식 분야는 거의 모두 단체종목으로 전승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즉 예능 종목은 국악의 대중화와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전승자가 양성되고 있어 자생력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개인 종목은 전승에 있어서 전수자 선정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개인 종목 중에서도 공예기술이나 음식, 무예 등은 대체로 비인기 종목이다.(최금오, 1997; 이용학, 1999)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단체별 구별과는 상관없이 사회의 필요성, 상품경쟁력이나 인기정도에 따라 전승교육의 현황은 달리 나타난다. 즉 사회의 필요성이나 인기가 높은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분야가 있는 것이다. 판소리, 민요, 가야금 산조와 같은 국악종목과 살풀이 품, 승무, 태평무와 같은 무용종목은 인기종목으로 전승교육이 원활한 편에 속하나 가사, 가곡 등 예능의 일부 종목은 사회적 필요성이 적어서 그런지 취약한 편이다. 그리고 대부

분의 공예기술 분야는 대중화 또는 작품의 판로면에서 볼 때 수익성이 적어 전수를 외면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점은 공예기술 분야 보유자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 예능분야는 괜찮아요. 공예분야는 사장이고, 나같이 혼자 하기도 하지만, 나전칠기 하려면 종업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월급을 주어야 하잖아요. 다 사양이에요.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공예분야에서도 괜찮은 것은 의식주에 합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걸어놓고 문양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되죠.

공예기술 분야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전승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공예기술분야 내에서도 차별성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공예기술 분야의 종목간 차이점은 보유자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 수요도 없고 쓰지도 않고, 갓 만드는 것 배워서 뭐하겠습니까? 같은 인간문화재인데 한 달에 1억 매상하는 공방이 있어요. 안성유기, 대목 몇 사람. 그런 것이 있는 가하면 갓 같은 것은 한 달에 10만원도 안 들어와요.

공예기술 분야 중에서 침선장, 매듭장, 악기장, 옥장, 목조각장, 사기그릇, 나전칠기, 놋그릇, 단청장 등은 현대인들에게 상품가치가 있어서 수요가 있는 편이다. 이런 분야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도 국가가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라는 호칭과 그 이수자라는 경력을 갖고서 생산된 공예품의 판매로도 생계의 유지가 보장될 수 있다. 즉 이런 분야는 "지정 받으면 가격이 달라진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명·삼베·명주 등을 짜는 직물공예장, 망건·탕건·갓의 피모공예장, 기와를 만드는 제와장, 화살통을 만드는 전통장, 바디장 등은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있

다. 즉 작품을 만드는데는 많은 품과 재료비가 들지만 대량생산이 어렵고 판로도 막혀 기능보유자가 생존해 있어도 뒤를 있겠다는 제자가 없어 기능단절이 우려되는 종목들이다. 이는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현재 수준의 전승지원금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보유자가 다른 생업을 갖지 않고 견뎌내기 어려운 형편에서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의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보유자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지 않습니다. 돈이 안되니까. 공예분야는 직계가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깨너머 배워 왔으니까. 1970년부터 정질부터 했죠. 직계손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돈이 안되니까. 지금은 돈이면 다되는 세상 아닙니까?....제자가 한 7명이 되는데,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1명은 교육조교(교수)로 여자이다. 1명은 이수생으로 여자이다. 1998년부터 2명은 전수과정에 있다. 이들도 여자이다. 맨 처음에 여자를 안 하려고 했어요. 무거운 것을 들고 해서 여자들은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보내고 그래서. 이수생 중에 우리 아들도 있는데, 안 한데요. 그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돈을 못 버니까 안 하죠. 고등학교 때 이수했고 대학 졸업할 때 안 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했죠.... 이것은 말하자면 고행이죠. 문화재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 옛날에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현상 유지가 되지. 현상유지가 안돼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안 찾아오는 것이에요.

공예기술 분야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전수교육에서의 차별성은 보유자들이 행하는 직접적인 전수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3]에서 주최하는 전통공예건축학교의 공예기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민족문화 보급선양, 문화재보존 보급 및 활용,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 및 관련기관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술분야 수강생 현황에서도 잘 보여진다. 재단 교육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수강생 수는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수, 침선(바느질), 소목, 대목은 미리 마감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수강생이 많다. 그러나 옻칠반, 입사반, 나전칠기반은 수강생이 적거나 없다. 일부 강의는 폐강이 되기도 한다. 2001년에 화각기초도 폐강되었다. 소목과 대목은 잘 된다. 나무로 실내장식을 하기도 하고, 특히 문화재보수 단청자격증 따는데 필요하다. 대목은 가르치는 데가 별로 안되어 수강생이 많은 편이다. 1년 기초반에서 공부하면 보석함과 서한(책상)은 만들 수 있다. 대목은 문화재 보수 및 실측 설계와 연관성이 있다. 문화재 보수 수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많이 수강한다. 단청도 문화재 수리 기술 자격증 시험이 있어 수강생이 꽤 많다.

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는 보유자 또는 이수자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자수, 침선과 같이 1년 정도 기초반을 수료하면 치마나 바지저고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는 분야는 인기가 있는 반면에, 활용이 어려운 나전칠기, 옻칠, 망건장 같은 분야는 거의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생활전선에서 활용 나아가서는 생계활동과 관련이 없는 분야는 자생력을 상실하여 전적으로 전통의 복원과 보존은 정부의 문화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관계에서 일정정도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는 많은 전통공예기술분야의 기본적인 재생과 보존은 정부의 문화정책에 기반한 기·예능 보유자의 전승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승교육의 실상과 문제점을 통해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0년에 설립되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한국의 집,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잠실놀이마당, 남산골한옥마을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3. 전수교육의 실상과 문제점

무형문화재의 관리는 크게 나누어 발굴 · 지정, 전승 · 보존, 보급 · 선양의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과정은 어떤 분야가 우선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이 무형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해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전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는 소멸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이 실현 · 계승되는 것으로 후계자 또는 전수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승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예기술 분야는 전승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점은 보유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 전수교육은 본인들이 이것을 배워서 무엇을 차려서 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공예기술은] 개인적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 분야에다,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하고, 잘 조직화 되어있는 일본에서도 이 분야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전통공예기술 분야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도 까다롭고 힘든 과정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장인'을 탄생시키는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보유자 및 관계자들이 전승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실상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흔들리는 주체들

(1) 정부: 규제 · 통제의 권력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법 24조 1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발굴 · 지정하고, 이를 전승 · 보존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의 실질적인 한 주체이다. 특히 공예기술 분야의 전승 · 육성에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전통공예 기술은 국가정책에 의하여 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로 고려시대에는 관공장 및 전업적인 수공업집단인 소(所)에서 수공업제품을 생산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에 경공장(京工匠)을 두어 왕실이나 귀족 · 관아의 수요를 담당했는데, 경공장의 직종은 사기장(沙器匠), 야장(冶匠) 등 130개 종목에 이르렀다고 한다.(이용학, 1999: 16참조) 그러나 일제시대의 민족말살정책과 해방, 6 · 25전쟁 등의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전통공예기술은 점차 사라졌고, 특히 서구지향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전통공예기술은 급속히 소멸되는 위기를 겪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된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이 없었다면 현재처럼 무형문화재가 보호되었으리라고는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1996년에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가 세계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가장 본받을만한 모범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가 사라져 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잘 보여진다. 보유자들도 대체적으로 문화정책의 이런 긍정적 측면에 공감하였다.

> 전성기 배울 때와 지금은 뒤집어졌다. 사기가 떨어졌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아비판도 해야한다. 왜 전성기 때의 사기가 쇠퇴되었는가? 우리 문화를 위해 자기 돈을 쓰며 그렇

> 게 배웠는데, 지정 받고 때가 묻고 정치에 물들고.… 정부에서 이것만도 안 했다면 다 끊어졌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잘 한 것도 있지만, 문화정책부재이다. [19]64년 진행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되는데, 그냥 옛날 그대로 밀어붙여 왔다. 잘못된 방향으로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부재를 드러내며 전통공예기술을 전승하고자 노력하였던 보유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무형문화재 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보유자들이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많이 제시한 점은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명예보유자 지정문제, 복수인정제도, 전승지원금 문제 등이었다. 그런데 이 비판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점은 현대/근대 분야에 비하여 전통에 맥을 닿고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이 점은 다음의 이야기들에서 잘 드러난다.

> 예술회 회원들을 현대 작품을 하고, 전통 보유자들은 전통을 되살려 민족의 얼을 이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물질문명에 현혹이 되어 구멍가게라도 하면 잘 사는데. 왜 이것을 해요? 장인정신 이전에 민족정신을 이어가는 것인데, 현대예술은 종신인데, 어떻게 전통예술은 나이 제한이 있나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금에 있어서도] 전통예술은 예술회원들의 반밖에 안 줘요.

> 우리 나라 현대교육이 전통을 무시한 채 서구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통만을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되죠.… 학교 교육은 우리 나라 교육정책과 맞물려 있다. 현재의 사회구조, 경제구조와 맞물려 있어 학교교육이 너무 현실적이라 우리 나라의 전통과 주체성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전통'이 '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천대를 받는 것은 서구발전 모델을 지향한 근대화의 산물이고, 이는 문화재 정책뿐만 아니라 한

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일반 현상으로, 서구지향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은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의 근원으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비판점이 거시적이고 근원적 측면으로 귀결되는 것은 문화정책 과정 내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직접적인 관계의 이면을 드러내는데, 그 중의 하나가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보유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 문화재라는 것은 유형문화재이고 무형도 문화재인데. 유형에는 수십 억을 투자하면서 무형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상(商) 논리, 무엇이냐 시장 논리로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유자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단기간의 전시효과와 실적을 위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점을 둔 정부의 문화재 보호정책은 유형문화재에 핵심이 주어졌고, 무형문화재 정책은 부차적이고 애매한 자리에 위치지워졌다. 문화재청의 예산을 보면 전체 문화재보호예산(유 · 무형 포함) 중 무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최금오, 1996: 67참조) 게다가 전통공예기술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위치는 다른 정부부처의 공예기술분야 장려정책과 맞물려 점차 소외되고 있는데, 이 점은 다음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노동부의 명장, 산업인력공단에서 우수기능인, 문화관광부에 문화상품과-지금은 문화콘텐츠 지원과에서 일을 하는데, 왜 이원화하느냐 말이에요.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도 있어요. 분명히 구별 있게 차별 있게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냥 따라가서 상업적으로만 하려고 그러느냐 말입니다. 인간문화재가 제일 먼저 지정되었는데, 노동부나 산업자원부가 원줄기는 인간문화재로 하여 인간문화재 밑에 파생적으로 다른 것이 되야 하는데. 반대로 노동부 명장, 산업자원부 기능인이 인간문화재를

앞서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이것을 인간문화재를 중심으로 체계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 엇갈리고 방향감각을 잃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문화재가 노동부의 명장이 되겠다고 신청했어요. 그래서 되지는 안 했지만, 대우가 더 좋고 그러니까 신청했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정부정책이 거꾸로 되어있으니까 이렇다는 말이에요. 정부가 한 축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보유자들은 명장, 우수기능인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정부는 보유자들을 전승지원금 등을 악용하는 "연금생활자" 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일반기술자"로 인식하여 규제 · 통제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현실은 전승지원금 등과 관련한 보유자들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90만원이 원래는 생활보조금으로 나왔죠. 그런데 먹고 논다고 전수교육비로 바꿨죠. 전수장학생 2명에게 장학금 주죠(…전수생도 10만원밖에 안줍니다. 10만원이라고 해도 차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오죠…) 그런데 이 돈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예로 *** 선생님(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이 집에서 여기에 오는 교통비, 점심 먹고 이것으로 되겠냐고요? 행정가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요. 과거의 장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장인들을 제압하니까 국가에 대하여 따지는 것이에요.

정부는 무형문화재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보유자, 조교에게 매월 전승지원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왔다. 또한 정부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수교육교재발간 지원, 공개행사 지원(공연, 전시 등), 전승장비 제작지원, 해외공연지원을 한다. 특히 전승지원금은 60 · 70년대에는 생계지원금이란 명목

으로 주었다. 그러나 지원금에 대한 명분이 불명확하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승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승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은 수 십년 동안 제기되어 왔고, 위의 사례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도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방식으로 노력해 왔다. 예로 정부는 2000년부터 고정적인 수입이나 소유재산이 없고 질병 등에 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보유자들에게는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전승지원금 문제는 정부나 보유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오래된 논쟁거리로 지정요건, 복수인정제도 등과 더불어 문화정책에 대한 보유자들간의 의견과 관계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코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의 논란을 관통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연구자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단지 정부가 문화정책, 특히 전승교육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가를 드러내고자 할뿐이다. 전승지원금 등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지원해 온 정부는 속된 말로 '몸을 주고도 뺨맞는 꼴'로,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문화재 정책의 효율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공예기술 분야의 교육 공간의 실태를 보면 이 의문점이 일정정도 풀린다고 할 수 있다. 공예기술의 전승교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간과할 수 없는 과제 중의 하나는 교육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특화 된 전문기관으로 한국 전통문화학교가 2000년 3월 2일에 개교하였다. 그러나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가 행하는 전승교육의 실제적인 공간은 전수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종목이 전승되는 지역에 우선성을 부여하고, 해당 중요무형문화재가 실현되고 전승되는 지역에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73년부터 전수교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 · 도와 공동부담으로 매년 1-2개의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현재 전국에 양주별산대놀이 전수교육관 등 40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예기술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의 일관된 이야기는 전수교육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보유자는 아니지만 평생동안 전통공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 전승공예가들을 육성하고 장려할 수 있는 공간, 공예관 자체가 없어요. 건물자체가 없어요.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가 전시하고 팔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예미술관이 없는 나라도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것이에요. 전통이 됐건 현대가 됐건 다 없어요. 전통공예 해서는 밥을 먹고 살 수 없어요. 누가 이수하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습관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안 하면 끊어지니까.

무엇보다도,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공예기술들이 각기 분화되어 지정된 현실에서 작업공간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효율적인 전승교육을 위해서도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전수교육관의 시설투자가 빈약하여 전승교육 공간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보유자들의 작업공간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은 연구자가 조사했던 강남전수관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데, 전통공예기술학교에서 단청 강좌를 수강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업(단청)은 이곳에서(강남전수관 옥상의 가건물 약 8평) 20명이 넘게 했어요. 5명이면 충분한데 여기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무형문화재 정책은 발굴, 지정을 위한 조사, 심의, 보존에 핵심이 주어졌고, 문화재 관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문화

재 교육 · 보급 · 선양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홀히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정부가 무형문화재 정책의 주체로서 어디에서 서야할 것이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정책 및 교육의 관리와 통제의 주체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즉 "문화재청장[4]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 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 ·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24조 2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는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강제하는 핵심주체이다. 이런 강제와 통제의 정부의 역할은 분야별 특성과 상관없이 일정한 전수교육의 기간지정, 즉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시행규칙 제 23조 4항)라는 규정에서까지도 관철되어, 보유자는 "수련기간은 정부차원에서 3-5년이다. 이수시키라고 하니까 이수시키는" 피주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수교육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교육 방식 및 프로그램 등은 보유자 또는 단체의 몫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유자는 교육의 주체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강제 당한 주체일 뿐이고, 오히려 국가가 실질적 주체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일부 보유자들이 전수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부의 강제와 통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핵심은 보호 · 장려이지 강제 · 통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강제와 통제의 틀 속에 위치한 전승교육의 담당자인 보유자로부터 문화의 자발성, 창조성 그리고 독특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4)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5982호 '99. 5. 24)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되고 동법 부칙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으로 바뀌었다.

(2) 보유자: 연금생활자인가 아니면 장인인가?

정부에 의해서 의무화되고 강제되었다고 하지만, 교육의 주체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앞에서 인용한 문화재 보호법 제 24조 2항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승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에 있고, 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유자 및 단체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공예기술은 일제시대와 6 · 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변형 · 단절되었다.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보유자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 연구하고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 악학궤범을 한번 보라고 해서, 악학궤범을 뒤지는데, 박이 있고 매듭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거기에 원다회 삼척오천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이희승 사전을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 보통 유사(流絲, 가마나 상여 등에 길게 늘어뜨린 매듭)라고 말하는데, 책을 보니까 유소(流蘇)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잊혀진 낱말까지 찾아냈다고. 최순우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생활에서 솜씨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낱말까지 끊어졌다고.

기술뿐만 아니라 "낱말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전통공예기술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을 통해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유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다. 이들이 전통공예기술 분야에 종사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는 공예기술에 바탕을 두고 생계활동을 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게 된 경우이다.

>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집에서 일을 하셨다. 장난도 하고 야단을 맞고 그

랬다. 군대 생활 후 사회생활을 하다가 1970년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1970년에 (아버님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을 받으신 후 가업이니까, 가업을 이어보자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때는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서 주로 일을 했다. 제자는 여러 명 있었으나, 이 길로 나온 사람이 없죠. 아버님이 가르치실 때는 일반 금은방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많았지. 70년대부터는 나하고 다른 한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 이 사람은 이수생으로 되어 있다. 50세 가까이 되었는데, 철조각을 한다. 공예분야는 직계가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깨 넘어 배워 왔으니까.

가계전승 형태로의 전수는 지정과정의 폐쇄성과 맞물려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상품화나 대량생산이 어려워 비인기종목으로 전락해 전수희망자가 없는 공예기술 분야의 많은 종목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가계전승과는 다른 전승의 큰 맥은 보유자 및 관계자 자신들의 관심과 노력이다. 이 점들은 다음의 사례들에서 잘 보여진다.

저기 있는 담배갑 같은 옛 유물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조선시대의 장인의 손길에서 피어난 우리의 문화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 특히 금속분야에 대한 아무 것도 없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때 예용해 선생님이 쓰신 「인간문화재」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그 책의 금속공예의 부분을 읽었는데, 맥이 끊어졌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날 밤잠을 못 이루었다. 담배갑에 대해 아는 분을 찾고 있었지만 아는 분이 없었어요. 1978년에 이학응 선생님을 만났다.… 그 당시 선생님은 노인이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계셨어요.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때 저녁을 함께 하고자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너무 감격하셨다고 해요.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당신의 재능을 배우고자 찾아왔다는 것이 아주 감격적이었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손을 잡고 가르쳐주셨다.…할아버지는 마지막 경공장이었다.…선생님을 만나

기 전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였다. 유물도 사서 뽀개도 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을 돈을 주고 시켜도 보고하였다. 선생님을 만나보고 나서야 선생님으로부터 이것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것이 다르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것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만39년이 되었다. 원래를 목각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한국일보에 인간문화재에 대한 기획기사가 실리고 있었는데, 선추장(扇錘匠)이라는 소개되었다. 그 때 고창에 사는 선추장을 만나서 그것을 배우겠다고 한국일보에서 기획기사를 담당하시던 예용해(芮庸海)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때가 예용해 선생님이 쓰신 「인간문화재」라는 책이 나오던 해야. 이때부터 매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때 이 책이 막 나왔다면 선생님이 한 권을 선물하셨는데, 무게로 다가왔다. 그래서 책을 보고 공예기술을 차례차례 세워보고, 다 배워보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심도 많다고 하였다. 다음에 찾아갔더니 한국일보 차에 태워서 정연수 선생님 댁에 데리고 가더라고.…멀리 고창까지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서울에서 매듭장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정연수 선생님께 데리고 갔다. 그 당시 매듭장은 소멸위기에 있었다. 처음 매듭을 보는 순간 매듭의 포로가 되었다. 정연수 선생님은 생업으로 매듭을 하고 있었다. 정연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후.…남원으로 끈 짜는 것을 배우러 가겠다고 하니, 선생님이 유종렬 전집 같은 것을 주시면서 몇 달 간 나를 테스트하더라고. 그런 후 어느 날 한국일보 남원 지국장에게 편지를 써주더라고. 혼자 기차를 타고 갔지. 끈 짜는 것을 남원의 박용학 선생님, 맨 마지막 다회장(끈목장)이지. 그 당시 전라도에서는 세 분(대구지방 심칠암, 남원지방 강기만, 박용학(마지막 다회장)을 만났는데 노환으로 매듭을 직접하지는 않았다. 그 분들한테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수를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궁중 윤백영)이 계셨다. 그래서 5분의 기술을 습득 통합하여 공부하고 작품 만들고 전수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70년도에 되었다 말이에요. 고재구, 전덕기, 김봉주, 모만한이 통영갓의 마지막 전승자인데, 나 혼자밖에 안 배웠어요. 사사로 4분이 내 스승인

데. 70년대 등록시 김봉주 선생님 밑에 등록했지. 그 당시 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끊어질 것이 눈에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배워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배웠다. 내가 네 분 다 장례 치르고....

이런 보유자들의 노력 속에서 전통공예기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성장을 하였다. 이는 정부와 특히 보유자가 전통을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끊임없이 교육·전승하는데 힘쓴 결과일 것이다. 특히 공예·기술은 사실 100% 전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원형이라는 것은 "계보가 스승"이라 말할 만큼 처음부터 제도교육이 아닌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교육의 결과이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실기교육을 시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지만 그것을 실기의 일종이니까. 이것은 실기로만 하는 것이니까. 선친으로부터 받을 때와 차이가 없다. 몸이 말들을 때까지 일을 해도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교육방식은 전적으로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진 것으로 법규상 특정한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기본 틀로 하여 만들어진 199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보존개발 국제정책회의」지침서에 따르면 교육방식은 '전통적 교육방식인 도제식 교육'이 핵심을 이룬다. 특히 공예기술 분야는 도제적 교육 성격이 강해서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인적체계가 형성되었다. 이 점은 다음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매듭은 옛날부터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져왔고 명칭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왔다. 정연수 선생님께 배울 때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일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배울라고 애를 썼다. 요즈음 배우는 사람

들은 누워서 떡먹기이다. 이유식을 내가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초기반은 6개월 동안 기계끈을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모여 매듭을 맺는 기초적인 방법을 배워. 그리고 연구반은 자기가 직접 끈을 짜서 1년 반 동안 배워. 실기교육은 아주 정확히 해야 한다. 단기강좌와는 별도로 연구회에서 전수교육을 하는데, 이중에서 전수장학생을 선발하고 이수자를 둔다. 연구과정은 5명만 한다. 실기교육은 한꺼번에 5명 이상은 안 해요. 손끝을 일일이 봐주어야 하기에 여러 명을 할 수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원들을 여러 명 투입해서 한다. 실기교육은 선생 하나에 5명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사례에서 보이는 인적구성은 문화재법에 근거하여 체계화되었다. 1994년 문화재법 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보조자(2001년 법개정에서는 전수교육조교로 바뀜)만을 둘 수 있으나, 경과조치로 이전 법규에 선발된 보유자후보, 조교의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수교육의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 전수교육조교(보유자후보 - 조교 - 보조자) - 이수자 - 전수장학생[5]

5) 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는 자"(시행규칙 2조1항)이고, 보유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시행규칙 2조2항)로 규정되어 있다. 이수자는 "중요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그리고 전수교육조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자중에서"(시행령 19조) 선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전수장학생은 "분야별 종

정부는 보유자 중심의 교육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로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하여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를 문화재 관리국에서 기·예능을 평가하여 교부하도록 하였고, 전수생에 대한 교육평가도 보유자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 실적보고서와 전수생 학습소감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각 분야별 차별성과 각 보유자의 독창성은 무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1994년 10월 7일자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부권한을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에게 이관하여 전수교육을 보유자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보유자가 직접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물론 보유자의 자율성을 높인 이 제도도 전승교육이 보유자 중심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절름발이 제도'라는 비판과 더불어 문화권력자의 양성과 단체의 사유화, 전승의 인맥화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임형규, 1999: 34; 이용학, 1999: 36) 특히 보유자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전승자들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는 길이 막혀 우수한 기량을 지닌 전승자가 도태되거나 소외감 등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전승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 통치에 의한 획일적인 전수교육 방식에서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과 책임교육은 전수교육에서 전통공예·기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승교육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전념하느냐에 따라 교육

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시행령 20조 2항) 선정된 사람이다. 전수생의 학습 능력에 따라 보유자의 판단아래 교육기간을 증감할 수 있지만, 전수교육은 기본은 5년이다.

의 성과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공예 · 기술 분야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 열악한 사정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공예기술 분야는 전수교육 희망자가 없어서 소멸될 위기에 있기도 하다. 기 · 예능 보유자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10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나 조교조차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목이나 유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제 37호 화장, 제52호 시나위, 제94호 벼루장 등의 종목자체가 보유자의 사망 후 해제되었다. 보유자는 생존해 있으나 전승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제91호 제와장, 화살통을 만드는 제93호 전통장, 제60호 장도장의 작중장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최금오, 1997: 31)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자들은 '장인과 교육자의 길'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예로 보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실기하는 장인은 장인의 길을 걸어야하는데, 한국사회는 교육까지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힘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수교육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더 많은 작품을 만들었을텐데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온 한 보유자의 이 후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결국 현재 문화정책의 형식논리상으로 작품, 연구, 교육 등의 모든 의무는 보유자에게로 귀결되고 있지만, 보유자는 문화정책에서 소외되어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 보유자가 이야기한다고는 한번도 안 듣고 문화재지청이 지정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자기 하고픈 데로 하더라구요.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보유자, 후보, 조교, 전수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해서 개정해야하는데, 이와 관계없는 언

론, 교수들의 이론만 듣고 마음대로 개정해버린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유자 등)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의지가 아쉽다는 말이에요.

정부, 보유자 그리고 연구자/학자들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 교육, 평가 등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 과정에서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소외당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보유자의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우수한 기술이라는 것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술, 전통은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중요시여기면 전통성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나는 통영 갓을 완전히 터득한 유일한 사람인데, 정부에서 신경안써요. 통영 갓 400-500년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통영 갓분야 인간 문화재가 4명인데, 제자는 나 혼자밖에 안 나왔어. 스승을 박해하고 무시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과 경쟁이 붙였을 때,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은 어디 가느냐, 전승은 없어지고 상품만 남는다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보유자의 위치가 어떠한지는 한 보유자의 다음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교수도 다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몇 분이 물을 흐린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 봐라! 상품만 팔고, 누구 제자 봐라! 인격도 나쁘고. 그래서 몇 분이 물을 흐린다고 다 모든 분들을 그렇게 봐서는 안되잖아요. 문화정책이 졸속행정으로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쇠퇴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감성적으로 인간을 움직이게 해야지, 정책적으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보조금 안 줘도 명예로 생각하고 보유자에 줄을 섰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보조금을 주느냐. 보유자를 돈 받고 상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문화 상품을 해서 자발적으로

먹고살아야 한다면 기술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장인은 좋은 말인데 기술자로 취급해요.

결과적으로 보유자는 전통문화의 창조자이고 교육자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정부 보조금을 허비하는 "연금생활자"로 간주되었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즉 전통상품을 생산하는 장인, 정확히 말하면 기술자가 되어야 했다. 이는 "문화"를 "재"(財)의 관점에서 접근한 문화정책의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상황에서 전통 공예 기술에 함의된 기술적 측면을 넘어선 사회 · 문화적 의미와 맥락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전통문화는 무형문화재 정책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무형의 유형화, 문화의 상품화와 박제화로 하나의 고정적 실체가 되어 창조성과 역동성 그리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2) 해체된 관계들!

(1) 문화의 획일화

연구자는 조사를 하면서 강남전수관의 공방이 분야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균일한 평수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논증하는 것으로 느꼈다. 각 분야별로 독특한 특성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한 공예기술 분야 보유자들은 전수관 공방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개인 공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공예건축학교 수업이 없는 방학동안과 특별한 전시활동 등이 없는 날에는 전수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처럼 강남전수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정책의 주체인 정부와 보유자간 의사소통관계가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보유자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전수관 지을 때 입주할 사람들 아무 의견도 듣지 않았어요. 큰 돈을 들

어서 만들었는데 너무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이에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누가 애정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문화재청은 3년마다 바뀌잖아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이 지니고 있는 문화를 양화(量化)하고 등질화 · 획일화하는 위험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방향성은 지정 등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이 점은 자신의 보유자 지정과정에 대한 보유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잘 보여진다.

내가 네 분 다 장례 치르고, 그리고 다 돌아가신 후 지정도 안되고. 나이가 어리다고 어쩌고저쩌고, 지방에서는 이 지역이 아니라고 타박하고, 그래서 때려 치고 서울로 올라버렸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작업을 했지. 지정하던지 말던지, 그랬더니 1991년에 지정 받았어.

보유자 지정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제가 교수라는 것이에요. 교수가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게다가 50세가 안 된다고, 그 때 49세였어요. 다음에 바뀌었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얼마냐 웃겨요. 이것 아니면 어떻게 작업과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 없이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는 보유자를 지정할 때의 연령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재위원회에서 50세를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6년에 이르러 전승의 단절이 우려되는 일부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나이 기준이 40세로 내려졌다. 그런데 여전히 나이 기준과 관련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공예기술분야는 50세로 다시 환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 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최금오(1997: 32)에 따르면, "… 50세가 적당하다고 본다. 활동시기가 40대인 예능 종목에 비해 기능 종목은 50대가 되어야 그간 쌓인 기술이 축적되어 지혜로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모든 예능은 어떤 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틀은 오랜 경험과 전통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깊은 이치에 이르러야 할 그 틀의 비결은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50세로 환원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40세인 경우에 전수생과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 자칫 위계질서의 확립에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 그런데 정해진 나이 기준에 의거한 획일성이 기술 또는 권위를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며, 문화는 학습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은 지정종목간의 분리와 교육의 적절치 못한 분업화로 나타난다. 예로 피모공예는 갓일, 망건장, 탕건장으로 나뉘어 있고, 금속공예도 조각장, 입사장, 유기장, 두석장, 장도장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물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화가 전승교육에서 '반쪽 전수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 보유자들의 이야기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 제자로는 이수자 1명, 조교 1명이에요.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전승하다가도 안 할려고 해요. 나는 세 분야 중 두 분야(양태/갓)만 가르칩니다. 양태, 총모, 갓은 한 방에 해야 하는데. 통영 갓은 한 방에 해야 한다고 저는 이 선생, 저 선생한테 배웠는데, 정부에서 이원화시키니까, 이렇게 되었죠.

불필요한 분화와 '반쪽' 전승교육의 악순환은 공예기술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예

로 종묘제례악은 종묘 제례에 사용되는 음악으로 함께 지정되어야함에도 따로 지정되어 있다. 음악 없는 제례와 제례 없는 음악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지정 당시의 불필요한 분리는 교육에서도 비효율적인 전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를 이차원의 평면에 놓고 실체화하고 획일화시켜버린 결과는 종목간의 교육지원에 있어서 등질화로 표출되어 더욱더 전승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점은 보유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 재료는 개인들이 사야죠. 까만 판이 알루미늄이에요. 재료, 정 그런 것 개인이 다 사죠. 재료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배우러 못 오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오고 그러는 것이죠. 와서 실기적으로 그림을 자기가 새기는 것이니까. 내가 보고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하는 것이니까. 먼저 선을 긋고, 다음에 원을 그리죠. 양쪽이 숙달되면 자기가 구상한 문양을 그림 새기죠. 초보자가 선 · 원에 숙달하고 문양을 그릴려면 2-3년이 넘어야되죠. 쉽게 이야기해서 전수에서 이수로 넘어가죠. 전수에서 이수로 넘어가면 장학금이 안 나와죠. 이수생에게 무슨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수만 되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벌러 딴 데로 나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수생들이 학교 강사 나가고 그러니까 전념해서 해요? 못하죠.

이는 전수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차별성을 획일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정부에서는 모든 종목에 일률적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지원분야는 사회의 필요성이나 인기도에 따라 전승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생활 및 전승실태조사(99. 2. 2-2. 28)결과에 따르면 공예종목의 경우 대부분이 전업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여도 전수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거의 모든 공예종목이 자의반 타의반 가계전승(家系傳承)의 형태로 전승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이용학,

1999: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별성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 편의적인 발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형문화의 사회 · 문화적 맥락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문화의 박제화와 상품화

정부가 보전하고자 하는 것은 보유자인가 아니면 이들이 보유한 기 · 예능인가 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이 점은 문화재청장이 2002년 2월에 최근에 논란이 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한 "중요무형문화재 기 · 예능 보유자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서도 잘 드러난다.

> 현재 항간에 俗稱으로 사용되고 있는 '人間文化財'란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부적합합니다. 우리가 약칭으로 사용하는 "保有者"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입니다. 즉 기 · 예능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1항)를 의미합니다. 이는 즉,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 · 보호하고 있는데 그 지정종목의 기능 또는 예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 또는 예능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을 의미하며 보유자가 신체, 정신상 또는 기타 사유로 기 · 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때에는 보유자로서의 기 · 예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은 계속 존속할 수 있으나 보유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가 문화재일 수는 없으며 "인간문화재"라는 말이 법률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하고 확실하게 의사전달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유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 ·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보유자가 아니라 예 · 기능에 중점은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면이 있다. 특히 예능에 비해 다양성과 독특성 두드러지고 개별화된 공예 · 기술 분야에서 지정된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 점은 문화재청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 무형문화재의 권위가 땅에…!!! 금번 8월 31일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A의 甲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람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A장 보유자 인정 예고자라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기 그지없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甲은 68년도에서 … (아무개) 선생님이 그려주신 …2인이 공동작업을 해서 …대전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세계는 입체, 부조, 판각등 다양한 조각의 기능연마를 통해 얻어지는 만큼 甲의 A기능은 시작 단계로 그가 이른바 인간문화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혀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점. 2) 부조 조각 외에 입체조각은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 3) 숙련된 A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각기능이 크게 모자란다는 점.(A, 甲은 인용자)

지정과 관련된 논쟁은 예능 보유자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 로비부정은 공예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예능부분은 아니다. 예능분야에서는 냉면 하나라도 사주고 지정받은 사람이 없다. 문제는 공예에서 생긴다. 공예는 지정받으면 종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엄격하게 이를 적용한다면 지정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는 문제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육성이 오히려 무형문화재 정책을 무난하게 이끌어 가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은 문화를 실체로 보는 문화재(文化財) 관점에 입각하여 기 · 예능을 보존 · 전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보다는 유형문화재에 중심이 주어졌다. 그런데 문화를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무형문화재는 삶과 분리되어 '원형'이 되고, '원형'이 존재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 · 문화적 시공간으로부터 탈맥락화되어 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각의 전통공예기술은 사회 ·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시기마다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운영되는 가에도 눈을 돌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형문화재는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박제화되어 박물관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기 · 예능을 보존 · 전승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문화의 가장 큰 속성중의 하나인 변화와 창조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무형문화재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전승하되, 그 맥락을 전승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원형에 중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형문화재가 실연되고 살아 숨쉬는 현재적 시 · 공간과 사회 · 문화적 관계 및 배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 정책이 기술 · 예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승의 인적체계 및 관계가 지속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 점은 보유자의 다음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 10년 동안 나 홀로 이 길을 걸었다고 그래서 동지가 필요했다고.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교육에 힘을 쏟았다고. 이제가지 정열을 쏟아서 연구회원들은 누구도 어디에 가서라도 정말로 제 몫을 할 수 있게되었다고. 한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다고...지금 다시 책을 내려고 하니까, 정말 나를 보필한 제자가 없다고. 개인지도이고 실기지도고 그래서 배우면 내 언저리 돌거나 아니면 다 떠나더라고. 대학에서는 조교라 뭐라고 해서 다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은 취미로도 많이 하고. 내가 왜 전수교육에 힘을 쏟았나하는 후회가 되더라고.

전수교육이 기·예능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기·예능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락하다보니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관계와 의미의 창조적 공간은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결과가 지닌 문제점은 다음의 에피소드(심우성, 1999: 13)에서도 잘 보여진다.

> 다음은 고인이 되신 중요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의 기능보유자 조성국옹의 경우이다. 『…줄다리기 보유자가 한 사람이고 보니 마을 사람들이 너 혼자 하래요! 그래서 나 문화재(보유자)사표 낼래요!』 그런데 사표를 받은 문화재관리국은 기·예능보유자의 사퇴는 없는 법이라며 접수를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예술의 스승은 어느 한 사람일 수 없고 본인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함께 하는 그 공간 및 사회·문화적 관계가 스승이다. 특히 공예기술의 생명은 다양성과 창조성이다. 하나의 전통공예기술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자연적, 사회·문화적 관계가 무시된 상태에서 전통공예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원형의 기술' 자체로만 남게 된다. 그리고 상품 지상주의는 모든 차이를 없애고 대량생산성과 균질성을 창조하여, 시장은 보유자에게 "문화"가 아닌 빨리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재"가 되라고 한다.

4. 나가며: 인+간(人+間)

무형문화재 제도는 그 동안 운영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무형문화재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국가지정·시도지정의 기준결여, 기·예능에 대한 형식적 심사 및 전문성 부족, 허술한 지정조사 체계, 보유자 인정 검증절차의 결여, 인정

절차의 주관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문제점은 보유자의 고령화, 전승지원금 지원수준 미흡, 단체종목 지원의 불합리, 취약종목 전수교육 침체, 전수교육관 대중화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본 연구자가 굳이 첨가하지 않아도 너무도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보유자들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즉 시민단체, 학술단체 및 관련자들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일대 개혁을 촉구하는 등 무형문화재 제도를 객관성 · 투명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과 정부도 제도운영 및 관리상,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키 위해 공청회, 정책 연구 및 포럼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열거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의 궁극적 문제는 문화의 담지자이자 창조자인 인간(人間)이다. 정확히 말하면 인(人)의 문제를 넘어 간(間), 즉 관계의 문제이다. 문화도 바로 이 관계의 상(上)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관계의 차원은 단순하게 무엇이라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고 상호를 담지하는 생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형문화재(文化財)는 특정한 시공간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창조 · 공유된 것으로 재(材)뿐만 아니라 문화(文化), 즉 재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생동하는 독특한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장려하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정책의 구조를 끊임없이 역동시키며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무형문화재 정책 구조의 중요한 축들인 정부, 보유자, 연구자들이 상호 부대끼면서 상호 사회 · 문화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법, 규정, 이미지 등의 틀에 서로를 가두고 있어, 서로의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서로의 역할에 대하여 만족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각자에게 고단한 외로움과 소외만 남게 될 것이다. 이 점은 한 보유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 매듭자체가 나에겐 엄한 스승이었어요. 매듭은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져 내 손끝까지 온 것이거든. 연구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우리도 성인이이 예를 갖추어 1604년부터 대한제국까지 의궤에 기록된 매듭장, 다회장 장인들 함자와 내가 발굴한 장인들에게 다례를 올렸다고. 자료가 없으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작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어. 그래서 책도 냈지. 나는 특별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 왜 그런가하고 생각해보았어. 러시아워(rush hour)때 모든 사람들은 현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홀로 과거, 조선시대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더라고.

외로움과 소외됨은 보유자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이 현대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을 논한다는 것이 결코 환영받을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나 사람들의 삶은 "시대에 뒤떨어진", "장래가 없는 직장, 문화재청" 등으로 쉽게 평가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여유를 잊어버렸는지 모른다. 결국 무형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대안은 어떤 규제 또는 방안을 새로 만드는데 있다기보다는 무형문화재 정책의 주체들이 서로 느끼는 외로움을 함께 할 상호 신뢰의 관계, 즉 간(間)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있지 않을 까한다. 상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어떤 정책도 지원도 백약이 무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상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끝이 어디일가는 보유자의 다음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 지금도 정부에서는 보유자가 잘못한다면서 법을 만들면서 현대 기술에 전통을 가미한 작품도 보유자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좋을지는 몰라도, 이들은 전통에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10년 정도 가면 진짜기술은 끊어질 것이다. 문화정책을 〔우리를〕 배척하는 식으로 나가면, 우리도 두고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는가 말이다?

정부와 보유자는 문화재보호정책의 주체로 서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그 시작은 상호 관계에 있다. 문화는 바로 관계, 즉 간(間)의 산물이고, 그 때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문화재 관리국

2001 「문화재보호법」, 2001.

서윤석

1984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20년", pp.229-246.

심우성

1999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제도", 문화재관리국, 「새 천년을 대비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공청회」, pp.12-15.

이용학

1999 무형문화재 전승·보존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석사학위논문.

임장혁

1998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존 상황", 한국민속학 29호, pp.83-87.

임형규

1999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공청회 토론자료", 문화재관리국, 「새 천년을 대비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공청회」, pp.34-37.

전경수

2002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의 적합성과 범위: 반성과 제언", 한국학술진흥재단 특별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문화이론과 정책적 실천에 관한 연구」, pp.1-19.

최금오

1997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공섭

1997 형문화재 보호정책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논문.

최종고

1996 "무형문화재 지정제도의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pp.1-8.

〈**Key concep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Artistic Craft, Transmission Training.

A Study of Problems in the transmission train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 Traditional Artistic Crafts —

Se-Gun Kim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transmission training and to improve the cultural policy through the point of view of the "human cultural property". They are expected to preserve and educate the traditional artistic craft that is a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ived to designate and preserve many crafts and arts since 1962 whe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was promulgated, the major parts of traditional artistic crafts are at the point of disappearance because they do not successfully adjust in the new environment of commercialization.

The result of study is as such: first, the policy considers intangible culture as the property in the point of view of cultural substantialism. This perspective disregards a proper sociocultural context. The policy has focused on the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ather tha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refore the policy has attached importance to the discovery,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n it's transmission training and promotion enhancement. Second, human cultural properties have been considered as "a pensioner" and do not have

played a more significant role to preserve, educate, promote and create traditional culture. Rather they are in the controls and oppressions of government which is an important subject of cultural policy. In this process, both subjects have been suspicious to each other. It is necessary for both to recuperate confident relations for a new environment to promote and cre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